의과대학 교원 국내외 출장비 지원을 위한 시행 지침

1. (목적) 본 지침은 의과대학 교원의 국내외 출장 규정에서 정의된 내용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.
2. 교원의 국내외 학회 관련 출장비 총액이 의과대학 출장규정에서 정의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.
3. 출장자는 별첨양식의 신청서와 근거 서류를 출장 전에 제출해야 한다.
4. 국내 출장
   ① 국내 출장비는 고신대학교 여비 규정에 따라 기초 교원에 한해 지급한다.
   ② 교육참여 실적이 우수한 임상 교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.〈신설 2021. 8. 31〉
   ③ 교원의 국내 학회 관련 출장비는 연 100만원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.
   ④ 국내 학회 관련 출장인 경우 학회 등록비를 포함할 수 있다.
   ⑤ 임상교원의 경우 년 2회 이내 교육 관련 워크숍 및 학회, 세미나 참가 시 출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.〈신설 2022.4.19.〉
5. 국외 출장
   ① 다음의 세 항목 중 하나를 충족하면 출장비를 100% 지급한다. 미충족일 경우 50%를 지급한다.〈개정 2023.8.29〉
      가. 전년도 교육참여 점수 20점 이상
      나. 2등급 이상 주저자 1편을 포함한 논문 점수 100점 이상
      다. KMJ 학술지에 주저자 원저 논문 1편 이상 게재
   ② 국외 학회 관련 출장은 연 2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.
   ③ 국외 학회 관련 출장비는 연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. 단 일본, 중국, 동남아시아로 출장하는 경우는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.
   ④ 포스터를 발표하거나 구연하는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.
   ⑤ 국외 출장비는 정액으로 지급하며 별첨 양식의 서류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.
   ⑥ 국외 학회의 온라인 참석시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회에 준하여 학회 등록비를 신청할 수 있다.〈신설 2021.8.31.〉
6. 국내학회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우를 제외한 국내에서 개최되는 5개국 이상이 참여한

국제 학회의 경우 일본 지역 학회 관련 출장 지침에 준한다.

부 칙

1. 이 지침은 2009년 3월부터 시행한다.
2. 이 개정 지침은 2010년 9월부터 시행한다.
3. 이 개정 지침은 201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4. 이 개정 지침은 201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5. (경과규정) 이 개정 지침은 2017년 3월 이후부터 적용한다.
6. 이 개정 지침은 202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7. 이 개정 지침은 2022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8. 이 개정 지침은 202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.